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92

2007년 8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 8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건강국장 이정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내용이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절차 전반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에 편중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2)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시험의뢰서와 시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로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불응할 수 있음 (안 제2조 및 제3조)
   3)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의뢰받은 검사·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와 그 외국어 번역문을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안 제4조)
   4)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안 제5조제3항)
   5)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남중)
   <총 괄 부 문>
   ○ 현행 조례의 내용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업무인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고
   ○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세 부 사 항>
   □ 제명변경에 대한 의견
   ○ 일부 타 시·도의 경우 관련 조례의 조항 및 내용은 유사하나 상위법인『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제명을 『OOO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로 되어있고, 우리시의 경우 조례제정 당시 『보건환경연구원법』제8조(수수료 등)와 관련하여 조례의 제명을 정함.
   ○ 이미 상위법인『보건환경연구원법』에 광역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4조(설치), 제25조(원장), 제

26조(소관업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어 제명을 '운영조례'로 할 경우 조례내용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표현할 수 있는 제명으로 선택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업무를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제명이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국한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의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절차 규정 미비점 보완에 대한 의견

1. "검사·시험의뢰" 조항신설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과정을 조례 제2조에 규정하였고, 검사·시험 의뢰절차 및 업무처리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검사·시험 의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검사·시험의뢰의 불응" 조항신설

○ 의뢰된 검사·시험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검사·시험사항은 상위기관에 의뢰하도록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 검사·시험의 불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수수료 반환사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라고 판단됨.

3. "검사·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조항신설

○ 제명을 '검사수수료 징수'에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로 조정하면서 의뢰받은 검사·시험을 완료한 때에 의뢰인에게 검사·시험성적서 등의 교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최초 1부의 성적서 교부 후 재교부의뢰에 의해서 추가교부를 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4.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항 자구수정

○ 수수료 납부 방법에서 현행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단서조항으로 현금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현금납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수수료 금액이 큰 경우 카드(법인카드)사용을 하고자하는 의뢰가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도 카드(법인카드)사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함.

○ 또한 민간병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 시립병원 등도 현재 진료비에 대하여 카드결재가 가능하며, 지방세 또한 카드납부(일시불일 경우 수수료 없으며, 할부인 경우 납세자가 할부수수료 납부)가 가능함.

○ 우리시에서도 향후 수수료 납부방법에 카드(법인카드)사용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의뢰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의2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수수료의 면제" 조항 자구수정

○ 수수료 면제 기관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

특별시농수산물공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독립된 기관형태를 유지하고 운영되고 있으나, 엄정한 보건·환경분야에서 시민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최첨병의 감시적 권능을 확보키위해서 수수료 면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임. 이를 통하여 서울시 및 각종 산하기관, 자치구, 수사기관,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고, 이를 담보로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검사·시험의뢰에 대하여 검사·시험 종별, 기관별로 구분이 되지 않아, 검사·시험 내역과 수수료 발생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 전산화작업을 통해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영의 효율성과 연구원 기관업무의 적절성 기준 및 향후 업무변경사항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사·시험수수료에 대한 기준 또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건물(실험실) 중 '강북농수산물검사소'와 '중부지소'의 경우 건물소유자로부터 유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강남농수산물검사소'와 '강서지소'의 경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로부터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어 검사소 및 지소의 소관업무의 독립성 등을 위해 유상임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 및 교육비 징수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

○ 보건환경연구원이 2003년 7월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0조에 의거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농림부 산하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설립과 병행하여 「농림부고시 2006-72호」에 의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미구성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